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진단지침과 관련하여 노면전차 특성을 반영한 철도안전진단 점검항목 및 진단용역 수행을 위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노면전차에 적합한 철도안전진단을 수행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기관 명칭 변경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침 내 명칭 일원화 반영

(안 제1장에서 제3장, 안 서식 2에서 서식 4, 별표 1)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안 제1장에서 제3장, 안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3호)

다. 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장에서 제3장)

라. 노면전차 특성을 반영한 철도안전진단 점검항목 반영 및 일부 항

목 내용 수정 등(안 별표6)

마. 노면전차 철도안전진단 용역 대가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기준 반영(안 별표7)

바. 노면전차 유형별 보정계수 반영(안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